

2026/27

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국내여행안내사 등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2시간 12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★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
도서명 : 관광법규

ISBN : 979-11-7393-328-8

발간일 : 2026-08-1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5,000원



관광법규

[목차]

제1편 관광기본법(p6)

제2편 관광진흥법(p17)

제1장 총칙(p19)

제2장 관광사업(p26)

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(p141)

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(p144)

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(p168)

제6장 보칙(p207)

제7장 벌칙(p217)

제3편 관광기금법(p224)

제4편 국제회의산업법(p236~257)

[약어]

-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
- 부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
-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- 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, 군, 자치구
- 시군구등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군구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
- 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군구
- 시행자는 사업시행자
- 관광지등은 관광지, 관광단지
- 기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
-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
- 공사는 한국관광공사
-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
붉은색은 시행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관광기본법

(이하 법)

제1절 총론

1. 목적

- 관광진흥 방향/시책 규정
- 국제친선 증진
- 국민경제, 국민복지 향상

-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 발전

2. 정부 시책

- 법 목적 달성을 위해 관광진흥 기본/종합
시책 강구

3. 법제상 조치

- 국가는 정부 시책 실시를 위해 법제, 재정,
행정 조치 강구

4. 지자체 협조

-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 강구

5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 제정/개정시 법 목적에 맞게 함

제2절 정부의 의무

1. 관광진흥계획 수립

가.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

1) 관광진흥 기반 조성 and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/시행

2) 다음 포함 요

- 정책 기본방향

-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
-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
- 관광진흥 기반 조성
-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/지원
- 관광사업 부문별 정책
- 자원 확보/배분
- 제도 개선
- 관광산업 인력 양성,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기반 조성
- 관광진흥 관련 중앙행정기관 역할 분담
-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, 위생, 방역 관리
- 기타 필요한 사항

3)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 거쳐 확정

나. 시행계획

-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/시행
-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

2. 기타 의무

1) 연차보고

-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에 관광진흥
시책/동향 보고서 제출

2) 외국 관광객 유치

- 해외 홍보 강화, 출입국 절차 개선 등 시책
강구

3) 관광 여건 조성

- 숙박, 교통, 휴식시설 등 개선/확충,
휴일/휴가 제도 개선 시책 마련

4)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 추진

- 관광자원 보호, 환경친화적 개발/이용, 고용
창출,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,
사회, 환경적 영향 충분히 고려

5)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 지도/감독,
필요한 시책 강구

6) 관광 종사자 자질 향상

- 교육훈련 등 시책 강구

7)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/개발

8)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해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 시책 강구

9) 기금 설치

제3절 국가관광전략회의 (이하 전략회의)

16조

- 총리 소속으로 둔다

(26년10월 29일 부터)

-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
- 의장은 대통령
- 의장은 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선정해 회의 소집/주재

(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)

1. 기능: 다음 심의/조정

- 관광진흥 방향, 주요 시책 수립/조정
- 관광진흥계획 수립(26년10월 29일 부터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/반영)
- 관광 분야 관련 부처 간 쟁점

-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2. 의장(총리)

- 안건 선정, 회의 소집/주재
- 출석할 수 없으면 전략회의 구성원 중 의장이 미리 지정한 자가 대행

3. 구성원

가) 의장 이외에 기재부, 교육부, 외교부, 법무부, 행안부, 문화부, 농림부, 보건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소기업부, 국무조정실장

나) 의장은 필요시

- 구성원이 아닌 부처 장이나,

- 안건 관련 부처 장과 협의해 구성원이 아닌 자를
- 출석시켜 발언하게 함

4. 정족수

- 과반 출석 개의, 출석 과반 찬성 의결

5. 회의 개최

- 연 2회, 반기에 1회 개최
- 의장은 개최 시기 조정

6. 간사

- 사무 처리, 1명(문화부 2차관)
- 회의록 작성